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3. 제안이유

-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자율신설기구(과학인재국)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5. 검토의견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신설기구인 과학인재국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

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2항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과학인재국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도정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붙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